	<h2>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4-1		
		제정일	2012. 12.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4	관리 부서	학생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대학의 사명과 교육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과 학생의 의무) ① 대학은 학생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지원서비스 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대학의 학생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조사,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지원서비스 계획의 수립 등) ① 학생처장은 학생과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지원서비스 계획을 제출받은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지원서비스 계획은 중간평가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학생지원서비스의 내용) 학생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른다.

1. 학생활동에 관한 지원
2. 학생복지에 관한 지원
3. 학생지도 및 진로지원에 관한 지원
4.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5. 교과 외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6. 심리상담 및 기타 학생지원에 해당하는 사항
7. 졸업생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학생지원서비스의 시행) ① 학생처장은 학생지원서비스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생지원서비스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력,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h2>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4-1		
		제정일	2012. 12.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4	관리 부서	학생처

제6조(학생지원서비스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학생처장은 대학의 학생지원서비스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학생지원서비스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학생지원서비스 운영조직) ① 학생지원서비스 계획,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학생지원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 또는 학생처장의 요청에 응한다.

1. 학생지원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원서비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지원서비스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 또는 학생처장이 학생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학생지도상담센터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 위원은 총장 또는 학생처장이 위촉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학생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⑦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정관과 범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기관 및 협조) ① 학생지원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해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지도교수, 보직교수, 교수회, 졸업생지원위원회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생지원서비스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전문 인력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학생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총장 또는 학생처장은 학생지원서비스 업무 중 총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적절한 인력 혹은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h2>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4-1		
		제정일	2012. 12.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4	관리 부서	학생처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학생지원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지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본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h2>	문서번호	3-4-1		
		제정일	2012. 12.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4	관리 부서	학생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